

## 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-4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### 「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#### 1. 개정이유

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시설기준의 현장적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재정립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검지·경보 설비의 기준정비 및 공정특성 반영 시설기준 합리화

나.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이동식 펌프 및 집수시설 세부기준 마련

다.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

#### 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[law.go.kr](http://law.go.kr))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[nics.me.go.kr](http://nics.me.go.kr))의 자료실-법령정보 확인